

춘천지방법원 2022. 8. 25 선고 2021나3598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2022. 8. 25 선고 2021나35985 판결

춘천지방법원 2021. 9. 7 선고 2021가단391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현

담당변호사 윤재경

변론종결 2022. 7. 21.

판결선고 2022. 8. 25.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. 9. 7. 선고 2021가단391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임야 9,403㎡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6. 12. 22. 접수 제265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장두봉, 판사 신흥호, 판사 여현주